

2. 정책 동향

□ 정책 이슈 : 외환자유화 일정의 타당성 논쟁

- (논쟁 배경) 정부는 98년에 계획했던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예정대로 실행하기로 결정
 - 이에 대해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(외환 자유화 내용은 “정부정책 동향” 참조)

○ 정부의 입장

- 자유화 일정을 준수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의 경제 여건과 보완대책을 감안할 때 자유화 실시는 큰 무리가 없음
 - IMF와 합의된 외환 자유화 일정을 변경한다면 최근 상승되고 있는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 상승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
 - 그동안 환율, 금리 등 거시 변수가 경제의 실세를 반영하도록 적절히 정책을 취해 왔고, 이미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임
- 그간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외환자유화를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
 - 외환 전산망 구축, 국제금융센터의 설립 등을 통한 투기거래 감시와 외환 위기의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
 - 외환 지급 및 거래의 일시 정지제, 외환집중제, 자본거래 허가제, 가변예치 의무제 등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
 -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및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시해 왔음
- 향후의 외환 자유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보완 조치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
 - 부채비율이 높은 재무 불건전 기업에 대한 단기 외화 차입 규제

-
-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제한
 - 비거주자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시 외국환 은행 경유 제도 유지
 - 선물환거래 만기시 차액 정산 의무화

○ 신중론자의 입장

- 현재의 여건은 자유화 일정을 계획했던 당시와 다소 상이하므로 기존의 일정을 신중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
 - 98년에 외환 자유화를 추진했던 목적은 외환시장 선진화와 더불어 외환 유입을 촉진하여 외환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, 현재는 외환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
 - 당분간 외환정책의 초점은 수출 확대와 외채 상환에 두어야 함. 자본거래를 통한 외환의 과다 유입은 환율을 지나치게 하락시켜 수출을 어렵게 할 수 있음
- 단기 자본의 유출입 확대는 경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
 - 현재 국내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금리, 환율과 같은 금융 변수의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
- 정부가 제시하는 보완 조치들은 대부분 아직 도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실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임
 - 외환전산망, 국제금융센터 등도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며 외환집중제, 가변예치의무제도 등도 준비되지 않았으며, 이러한 보완 조치들을 99년 4월1일에 맞추어 준비하는 경우, 준비 과정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음
 - 또한 이러한 제도들이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가능성 경고 및 폐해 방지를 위해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지의 여부는 아직 검증된 바 없음

□ 정부 정책 동향 (2.10~18)

산업자원부(2.18) 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류 사업자도 제조업 수준의 각종 정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- 산업기반자금에서 유통합리화자금 770억 원을 확보하여 물류 사업자에게 저리로 지원 - 물류산업의 각종 진입규제 철폐
재정경제부(2.18) 「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약」 상반기중 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OECD의 권고안에 따라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와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 -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“기업 지배구조 개선위원회”를 2월중으로 발족할 예정
재정경제부(2.17) 외환거래 자유화 계획, 예정대로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단계(1999. 4. 1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인: 만기 1년 이상 예금 및 신탁 상품 투자 허용, 국내 외화증권 발행 자유화 · 국내기업: 1년 이하 단기 해외차입, 해외부동산 투자 허용.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해외차입 불가 · 금융기관: 선물환거래 실수요 원칙 폐지, 외국환 업무 등록제로 완화 · 개인: 換錢商 등록제로 전환 - 2단계(2000년 말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인: 1년 미만 예금 및 신탁상품 투자 자유화 · 국내기업: 해외 예금 및 신용 공여 자유화 · 개인: 여행경비, 해외송금, 해외이주비 및 교포 재산반출 등을 완전 자유화
재정경제부(2.17) 제2금융권 구조조정, 상반기중에 마무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금융권 구조조정은 대주주의 책임 아래 增資와 합병을 통해 경영 정상화 추진 - 부실이 심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되, 손실 분담 차원에서 기존 주주들에게도 증자 등 자구노력을 요구
방송개혁위원회(2.11)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업, 언론사 및 외국인이 전체 지분의 33% 범위 내에서 위성방송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 - 위성방송 사업은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는 즉시 허용
산업자원부(2.10)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세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과 인력 개발비를 공제해주고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 -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고 외국과의 거래에 대한 관세 환급 및 각종 세제 지원

(정 반석 bsjoung@hri.co.kr 724-4045)